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10호 2024. 3. 6.(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4-55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제3호)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4-62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4-66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7
광양시 고시 제2024-69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9
광양시 고시 제2024-7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12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4-576호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광양시 공고 제2024-608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

회 람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광양시 고시 제 2024-55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제3호)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제3호)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광 양 시 장

- 가. 유원지의 위치: 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
- 나. 유원지의 규모: 1,129,990㎡
- 다. 유원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백운 유원지	유원지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	1,129,990	-	1,129,990	2009. 7. 13.	



라. 유원지 조성계획(유원지 제3호)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비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129,990	-	1,129,990	12,684	15,088	38,424	43,186	시설율 19.6%
시설소계	223,727.2	감)2,814	220,913.2	12,684	15,088	38,424	43,186	
운동시설	21,379	-	21,379	152	152	152	152	
휴양시설	125,709.2	감)2,814	122,895.2	12,496	14,900	38,236	42,998	
특수시설	24,459	-	24,459	36	36	36	36	
관리시설	52,180	-	52,180	-	-	-	-	
녹 지	906,262.8	증)2,814	909,076.8	-	-	-	-	녹지율 80.4%

마.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3	백운 유원지	- 시설면적 변경 : 감) 2,814 ㎡ - 휴양시설면적 : 감) 2,814㎡ - 녹지면적 변경 : 증)2,814㎡	옹벽공사에 따른 면적 변경(2,814㎡)



바.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부 지 면 적 (㎡)			시설면적(㎡)				비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129,990	-	1,129,990	12,684	15,088	38,424	43,186	시설율 19.6%
시설소계			223,727.2	감2,814	220,913.2	12,684	15,088	38,424	43,186	
운동 시설	소 계		21,379	-	21,379	152	152	152	152	
	1-1	물놀이장	18,798	-	18,798	152	152	152	152	
	1-2	수상레포츠	2,581	-	2,581	-	-	-	-	
휴양 시설	소 계		125,709.2	감2,814	122,895.2	12,496	14,900	38,236	42,998	
	2-1-1	숙박시설	15,833	-	15,833	2,801	2,801	6,394	6,394	
	2-1-2	숙박시설	15,750.2	-	15,750.2	1,326	1,326	1,461	1,461	
	2-2-1	복합휴양시설	30,370	감2,814	27,556	3,455	5,859	6,288	11,050	
	2-2-2	복합휴양시설	29,533	-	29,533	4,826	4,826	23,978	23,978	
	2-3	오토캠핑장	34,223	-	34,223	88	88	115	115	
특수 시설	소 계		24,459	-	24,459	36	36	36	36	
	3-1	초화원	24,459	-	24,459	36	36	36	36	
관리 시설	소 계		52,180	-	52,180	-	-	-	-	
	4-1	도로	32,997	-	32,997	-	-	-	-	
	4-2	산책로	19,183	-	19,183	-	-	-	-	
녹 지			906,262.8	증2,814	909,076.8	-	-	-	-	녹지율 80.4%

바. 유원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관계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광양시청 공원과 비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061-797-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산2임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호)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3. 7.

광 양 시 장

가. 공원의 위치 :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산2임 일원

나. 공원의 규모 : 355,562㎡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서산공원	근린공원	광양읍 칠성리 산2임 일원	355,562	-	355,562	1986.07.07. (2020. 07. 01.) 광양시 242호	미집행 구간 실효



라. 공원조성계획(공원 제21호)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55,562	-	355,562	1,245	629	1,245	629	
시설소계	81,384	감)18,859	62,525	1,245	629	1,245	629	시설률:17.6%
도로 및 광장	7,061	감)4,610	2,451	-	-	-	-	
조경시설	6,725	감)1,254	5,471	-	-	-	-	
휴양시설	47,276	감)9,099	38,177	-	-	-	-	
유희시설	390	감)390	0	-	-	-	-	
운동시설	488	감)488	0	-	-	-	-	
교양시설	6,459	감)2,656	3,803	1,200	629	1,200	629	
편익시설	12,985	감)362	12,623	45	-	45	-	
녹지	274,178	증)18,859	293,037	-	-	-	-	

마.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서산공원	■ 시설면적 변경: 감)18,859 ㎡ - 도로 및 광장 감) 4,610 - 조경시설 감) 1,254 - 휴양시설 감) 9,099 - 유희시설 감) 390 - 운동시설 감) 488 - 교양시설 감) 2,656 - 편익시설 감) 362 ■ 녹지면적 변경: 증)18,859 ㎡	■ 2020.7.1.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사유지 면적의 공원구역 실효됨에 따라 현재 여건 반영 ■ 편익시설(주차장 등), 휴양시설, 교양시설 등 추가로 근린공원 기능 향상을 도모



바.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부 지 면 적 (㎡)			시설면적(㎡)				비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55,562	-	355,562					
시설소계			81,384	감)18,859	62,525					
도로 및 광장	소 계		7,061	감)4,610	2,451					
	1-1	산책로	5,810	감)3,359	2,451					
	1-2	광장	1,251	감)1,251	-					
조경 시설	소 계		6,725	감)1,254	5,471					
	2-1(폐지)	생명의 숲	6,725	감)6,725	-					
	2-1(신설)	테크로드 1	-	증)4,232	4,232					
	2-2(신설)	테크로드 2	-	증)110	110					
	2-3(신설)	테크로드 3	-	증)35	35					
	2-4(신설)	테크로드 4	-	증)8	8					
	2-5(신설)	테크로드 5	-	증)3	3					
	2-6(신설)	테크로드 6	-	증)1,083	1,083					
휴양 시설	소 계		47,276	감)9,099	38,177					
	3-1	전망쉼터	41,961	감)3,784	38,177					
	3-2(폐지)	휴양쉼터	157	감)157	-					
	3-3(폐지)	수변쉼터	5,158	감)5,158	-					
유희 시설	소 계		390	감)390	0					
	4-1(폐지)	지압로	390	감)390	-					
운동 시설	소 계		488	감)488	0					
	5-1(폐지)	운동시설 1	202	감)202	-					
	5-2(폐지)	운동시설 2	286	감)286	-					
교양 시설	소 계		6,459	감)2,656	3,803	1,200	629	1,200	629	
	6-1 → 4-1(변경)	장애인 복지관	6,459	감)2656	3,803					
편익 시설	소 계		12,985	감)362	12,623					
	7-1 →5-1(변경)	주차장	10,121	감)2,081	8,040					
	7-2 →5-2(변경)	주차장2	2,354	증)2,229	4,583					
	7-3(폐지)	화장실	510	감)510	-	45	-	45	-	
	녹 지		274,178	증)18,859	293,037					

사.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관계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광양시청 공원과 비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061-797-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6.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명당3길 42 (태인동) 외 1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3.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2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789, 1790, 1791, 1792, 1793	전라남도 광양시 명당3길 42 (태인동)	20240306	20191113	마을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360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0길 16 (마동)	20240306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6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2024. 3. 6.(수)
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2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2부. 끝.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 (m)	폭 (m)		시작	끝		
1	마당재길 (1차중속도로)	길	옥곡면	대죽리 산51-4	대죽리 601-4	도면 참조	201.797	7	20	25-1	25-22	옛 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2	청도길 (1차중속도로)	길	진상면	지원리 1544-0	청암리 763-13	도면 참조	93.681	6	20	6-1	6-10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무등길 67(중동)	2024. 3. 6.	건축물 멸실 및 건축물 대장 말소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6.

광 양 시 장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조건 완화 및 광양시 지속 거주요건 강화(안 제4조제3항)
- 지원액 일부상향에 따른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4. 3. 1. ~ 3. 21. (21일간)

6. 의견제출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출생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우 57741)
- 전 화 : 061-797-4066
- 팩 스 : 061-797-4171
- 전자우편 : knhid228@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산후조리비용은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산모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중인 대상자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에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 중 6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표 2)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이 용 여 부	지 원 대 상 자	1 일 지원액	최 대 지원액
1. 관 내 민 간 산 후 조 리 원 이 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10만 원	140만 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산모	9만 원	126만 원
	마. 그 외의 경우	10만 원	100만 원
2. 관 내 공 공 산 후 조 리 원 이 용	가.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차. 귀농어·귀촌인	본인부담금(30%) 전액 지원	
	카. 그 외의 경우	10만 원	100만 원
3. 미 이 용	관 내 산 후 조 리 원 미 이 용 자 *	40 만 원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한다.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예 []아니오		
	배우자			[]예 []아니오		
	자 자			[]예 []아니오		

광양시 자체 서비스	출산장려금	《출생일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 신청구분 : 출생 [] 돌 [] 두돌 [] 세돌 [] 네돌 이상 [] · 거주사항 : 부모 중 1명에 한하여 직업상 사유로 관외 거주하는 경우 [] ※ 출생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 사이 타 지역 전출입 이력 있는 경우 신청불가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만 행복쿠폰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순위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 신청구분 : 출생 [] 돌 []				
	다둥이(3명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전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순위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산후조리비용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구분 : 관내 조리원 이용 [] 미이용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4.1.1. 이후 출생자)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출생순위 : 첫째 [] 둘째 이상 []			1. 국외출생 여부 :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예 [] 아니오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부모급여(현금)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기타) [] 조제분유([]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기타)				
	해산급여	[] 저소득층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 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 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회원명 : 생년월일 : 멤버십 번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회원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멤버십 번호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BC카드(은행)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에 √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	----------	-------	-------	------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처리자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 거주기간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5. 광양시 출산장려금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의 사망·이혼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외 거주자의 직업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6.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신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2. 광양시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지원기간 중 신청인, 배우자,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 전출·입 여부 확인)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광양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광양시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호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양시 출산장려금의 출생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순위로만 인정됩니다.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이 중단되며, 신청기간(90일)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 ② (생 략) ③ <u>산후조리비용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하되 배우자의 사망, 이혼, 미혼모인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한다.</u> ④ (생 략)	제4조(지원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산후조리비용은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산모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 현행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이용여부	소득기준	1일 지원액	지급액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주거·의료 급여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 한다)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10만원	최대 1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산모	9만원	최대 126만원
	그 외의 경우	8만원	최대 80만원
미 이용자	20만원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



(별표 2) - 개정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이 용 여 부	지 원 대 상 자	1 일 지원액	최 대 지원액
1. 관 내 민 간 산 후 조 리 원 이 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10만 원	140만 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산모	9만 원	126만 원
	마. 그 외의 경우	10만 원	100만 원
2. 관 내 공 공 산 후 조 리 원 이 용	가.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차. 귀농어·귀촌인	본인부담금(30%) 전액 지원	
	카. 그 외의 경우	10만 원	100만 원
3. 미 이 용	관 내 산 후 조 리 원 미 이 용 자 *	40 만 원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한다.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접수일 : 20 . .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 와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광양시 자체 급부			☐ 출산장려금 (출생, 돌)		출생일 기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 이상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 직업상 사유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산후조리비용 (관내 조리원이용, 미이용)		출산일 기준 광양시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 다자녀(둘째아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출생, 돌)		출생일 기준 광양시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 직업상 사유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 다둥이(셋째아 이상)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일반	서비스명	아기 이름		신청 내용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국외출생 여부 : ☐ 예 ☐ 아니오 2.복수국적 여부 : ☐ 예 ☐ 아니오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아동수당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본		[] 기저귀 ([]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기타) 지원대상 [] 조제분유([]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기타)				
		국민행복 카드신청		[] BC카드 (은행) ※ IBK기업, 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우6리, 전북, 신한, 제주, 우체국, 부산, 수협, 하나 은행 신청 가능		[] KB국민 카드	[] 롯데 카드	[] 삼성 카드
셋째아 이상 지원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고객번호 미 기재시 신청 불가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급부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광양시장 귀하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공무원 처리할사항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양육수당 등 담당자 공람·확인			수신 여부 확인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관내 전입일) ()째	날짜: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날짜: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날짜: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건소 성명: ☐ 한국전력공사 성명: ☐ 서울도시가스 성명: ☐ 지역난방공사 성명:	
처리자	20 년 월 일 소속: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 거주기간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통장사본 4. 기타 소명자료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3. 산후조리비용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후조리비용납부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직업)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 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광양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등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광양시 자체 급부 관련 광양시장이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등 각종 지자체 서비스 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이용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제공하는 항목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조회, 주소, 카드수령지, 배우자 성명, 전화번호, 자녀 수, 자녀성명, 생년월일, 카드번호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 하			
출산장려금 등은 매년 생일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 없음에 주의바랍니다.)		확인자 _____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장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읍·면·동, 사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선정통지 및 급부 제공 읍·면·동, 사군구, 한전 등/ 보육료·출산장려금·의료비,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5. 광양시 출산장려금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의 사망·이혼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외 거주자의 직업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6.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신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2. 광양시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지원기간 중 신청인, 배우자,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 전출·입 여부 확인)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광양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시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광양시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승차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 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호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양시 출산장려금의 출생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순위로만 인정됩니다.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이 중단되며, 신청기간(90일)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광양시장

1. 조례안명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허가기간에 맞춰 공유재산 사용기간 정비

3. 주요내용

- 무상사용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6조)
 - “영 제17조”를 “법 제21조”로 변경
- 문구를 명료화하고 단서규정 삭제(안 제16조)
 - “허가받은 날”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 “책정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변경 및 단서규정 삭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입법 예고기간 : 2024. 3. 5. ~ 2024. 3. 25.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회계과(우 57785)
- 전 화: 061-797-3273
- 팩 스: 061-797-2581(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parkeh@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조례명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영 제17조”를 “법 제21조”로, “허가받은 날”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책정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u>허가받은 날</u> 을 기준으로 <u>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	제16조(무상사용 기간) ① ----- ----- <u>법 제21조</u> ----- ----- <u>사용허가를 받은 날</u> ----- <u>한다. <단서 삭제></u>

